| 국회(입법부) | 법을 만드는 국민의 대표기관 |
| --- | --- |
| 정부(행정부) |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 |
| 국무회의 |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 |
| 감사원 | 행정부 최고 감사기관 |
| 행정 | 법률 집행 및 공익 목적 정책 수립 실행 |
| 사법 | 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국가작용 |
| 사법부 독립 필요,목적 | 공정한 재판 실현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|
| 항소 | 1심 판결에 불복, 2심 법원에 상소하는 것 |
| 비례대표의원 |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선출되는 국회의원 |
| 인사청문회 | 질의응답으로 후보자의 능력, 도덕성 검사하는 **제도적 장치** |
| 탄핵소추의결권 | 국회가 공무원의 탄핵을 의결하는 것 |
| 상임위원회 이유 |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함 |
| 계엄 | 비상사태시 해당 지역 사법권/행정권을 군이 맡는 일 |
| 대통령 지위 | 국가원수, 행정부 수반 |
| 위헌법률심판 |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|
| 탄핵심판 | 국회가 의결한 탄핵의 정당성 심판 |
| 헌법재판소 역할 | 위헌법률심판, 헌법소원심판, 탄핵심판, 권한쟁의심판, 정당해산심판 |
| 헌법재판소 | 헌법 수호 기관, 기본권 보장 기관 |
| 노동조합 | 근로조건 개선, 지위향상 목적으로 근로자 주체로 조직된 단체 |
| 근로자 |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, 임금을 받는 사람 |
| 노동 3권 | 단결권, 단체 교섭권, 단체 행동권 |
| 단결권 |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권리 |
| 단체 교섭권 |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와 협상할 권리 |
| 단체 행동권 | 단체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쟁의할 권리 |
| 기본권 제한 사유 | 국가 안전 보장, 질서 유지, 공공 복리 (방역) |